

강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3. 18.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84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5. 강남구청장(위생과) 제출

나. 상정의결

-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1.3.18.)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보건소장 : 양오승)

가. 제안이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강남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추진필요성

▶ 어린이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함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설치, 인력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소 현장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 대상별(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시설 개요

- 인력 : 13명(센터장 1명, 팀장 2~3명, 팀원 9~10명)

- 시설 : 사무실(100㎡ 이상), 회의실 겸 상담실, 교육실 등

- 센터 위치

▶ (제1안) 구 보건소 및 공유재산 중 유휴 공간 발굴 및 사용

▶ (제2안) 수탁기관에서 강남구 내 사무실 확보 및 사업비에서 임대료 사용

○ 위탁기간 : 2021. 9. 1. ~ 2026. 8. 31. (5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자격 범위

▶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수탁기관 선정기준

▶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회의실, 교육장, 조리실 등)의 설치 계획 방안, 사업 수행능력, 공신력 및 재정 부담능력,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사업규모 : 6억 규모

※ 국·시·구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예산 : 210,000천원

구 분	예산액 (100%)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비고
2021년 (9월~12월)	210,000	63,000	73,500	73,500	4개월 운영
2022년 (1월~12월)	600,000	180,000	210,000	210,000	

- 위탁예산 사용 기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

- 인건비(최대 72% 이내), 시설임대료, 영양·위생교육 등 급식관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위탁은 민간의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효

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동의안은 2021.2. 제291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고 2021.3.12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¹⁾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효율성·전문성을 감안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 사업은 국·시·구비(30:35:35) 매칭사업으로 2021년은 2억1천만원(2021.9~12)이 소요되나 매년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센터 운영은 자치사무²⁾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2021.9.1.~2026.8.31.)으로 정하고 있으나 통상 2~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5년으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³⁾에 따르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시설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건의 ‘위탁시설개요’에는 센터의 위치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⁴⁾ 제3조제2항에서는 ‘강남구보건소 내’로 확정되어 있는 바 센터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조례를 개정하고 위탁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동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2020년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안건에 따르면 향후 민간위탁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시행하려는 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위탁기간을 5년으로 추진할 시 민간위탁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진 시 3년으로 계약할 것을 부서에 건의함.

○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실제 위탁계약을 3년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강남구보건소내)
-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관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